

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

[시행 2023. 12. 27.] [관세청훈령 제2300호, 2023. 12. 21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개정사유

- 사전세액심사 실무와 훈령 불일치, 근거규정 부재 등으로 개정

◇ 주요 개정내용

- 담보기준가격 관련 규정 마련(§17⑦신설)
 - (배경) 사전세액심사제도의 핵심요소인 담보기준가격 관련규정 없음
 - (내용) 담보기준가격 정의, 적용대상, 사전공표 조항 신설
- 산지가격조사기관 지정·해제 공고 절차 마련(§17⑧·§18④·부칙신설)
 - (배경) '관세청장이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'을 명확히 하고, 필요시 조사기관 변경 또는 추가 지정*을 위해 지정·해제 공고 절차 마련
 - (내용) 지정·해제 공고 절차 조항 신설, aT가 산지가격조사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부칙 신설
 - *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가 유일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이나, 향후 임산물 등 저가신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기관 추가 지정 필요
-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(§21⑤개정)
 - (배경) 정부기관 및 AEO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심사생략 대상 확대로 신속통관 지원 및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
 - (내용) 정부·지방자치단체·AEO·WTO양허관세 추천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생략
 - * 현행 ① 관세·부가세 100% 면제 ② 최저 징수금액 미만 ③ 담보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등 사전세액심사 생략
- 관세조사 관할세관 변경(§22③개정) ※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5조 개정
 - (배경) 농수산물 조사 관할세관 불일치(훈령≠실무)로 규정 현행화 필요
 - (내용) 서울세관 관할은 '인천세관', 평택세관 통관분은 '소재지 관할세관'
- 표준질문서 및 검토결과서 제출 명문화(§22④개정, 별지제6호~7호신설)
 - (배경) 과세자료확보 위해 심사부서로 관세조사 의뢰 시 표준질문서(납세의무자에게 징구)와 검토결과서(세관장 작성)를 필수 제출하나 근거규정 없음
 - (내용) 표준질문서 징구*와 표준질문서·수입농수산물사전세액심사검토결과서 제출 조항 신설, 서류양식 및 작성요령 별지서식 신설
 - * 표준질문서는 관세법 제113조제2항·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액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임을 조항과 별지서식에 명문화하여 근거규정 마련
- 관세조사 간이 절차 마련(§22⑥신설)
 - (배경) 비과세건 중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건에 대해 간이한 관세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심사 진행
 - (내용)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90% 이상인 경우 관세조사를 간이한 방법(통관부서 회신)으로 조사종결하는 절차 마련